03. 병원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인신상 상해를 입을 경우 반드시 병원에서의 보상처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때에 병원에서 알면 유익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다.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이고 가해자측의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비지불이 가능한 경우엔 해당 자동차보험 회사로부터의 지불보증 확인 후 자동차보험의료수가기준에 따라 치료를 개시한다. 단,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의 확인이 곤란하여 응급으로 치료하는 동안의 진료비 등은 피해자 본인 측에 직접 징구할 수 있다.

이 때 병원측에 직접 지불한 진료비는 이후 해당 보험회사에 영수증 등을 근거로 청구하여 수령한다. 치료병원은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과 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등이 해당되고 이들 병원으로부터 진료받은 진료비가 보상된다.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혹은 자동차책임보험을 포함한 모든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도 적어도 자동차책임보험(책임보험도 미가입이면 정부의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범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함)에 의한 보상은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책임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진단병명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지급한도액 범위내의 진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진료비에 대하여는 일반수가로 산정된 진료비를 피해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야 하므로 가해자 측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유익하다.

- 입원병실은 일반 기준병실로 하되 병실사정 등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7일간에 한해 상급병실료를 인정받게 된다. 일단 상급병실로 입원이 되면 일반병실로의 전원이 쉽지않은 경우도 있으니 병원측에 일반병실로의 전원을 독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의 치료상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엔 기간의 제한없이 인정받게 된다.

교통사고와 관련없는 질환에 대한 진료비 및 기존 질환(기왕증)에 대한 진료비와 지정진료에 의한 특진비용 등은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며 의료기관 또한 고의 또는 과실없이 진료중에 발생한 증상(합병증)에 대한 진료비와 기왕증이라 하더라도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로 인해 추가된 진료비 및 당해 환자의 상태 또는 상병으로 보아 불가피했던 지정진료비는 인정한다. 이러한 인정에는 해당 의사의 소견서 등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교통사고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의학적인 판단상 더 이상 그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진료가 불필요한 경우에 의료기관은 그 사유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설명 고지한 후 해당 환자에 대해 퇴원 후 통원 또는 하급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지시할 수 있고 이 지시에 반하여 계속적인 입원치료시 해당 진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물론 통원치료비는 당연히 보상된다.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하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의료기관은 새로운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가 진료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 등 진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때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계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회복이 곤란(증상의 고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후유장해진단을 교부받아 해당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후유장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후유장해 판정시 보험회사(공제조합 등 포함)측에 의해 막연히 진행되거나 일방적인 의료심의를 거치쳐서 근거없이 제시되는 후유장해율에 의존하지않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다만, 복잡하고 모호한 장해판정에 대하여는 보상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익하다.

이 경우 장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회사로부터 영수증 등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으로 분류되면 패소자의 부담으로 된다. 후유장해진단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상해 혹은 생명보험의 경우 및 산재보험의 경우 등에 있어 각각 그 기준이 다르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초진 진단서에 누락되지 않도록 통증부위를 정확히 주치의에게 설명하고 의심이 되는 경 우 정밀검사(CT, MRI, 근전도등)를 의뢰하여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해 놓는다. 또한 해당 진료과목을 정확히 선택한다. 즉, 인대파열, 골절은 정형외과로, 두개골 골절 시는 그 자체 뿐 아니라 뇌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신경외과 및 신경정신과 또는 해당 신경손상 부위의 진료과목을 선택(이는 후에 장해진단 발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한다.